

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안내

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을 들어야 하는 이유?(실시근거)

-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)
 -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-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(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)
 - ① 사업주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33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.
 1. 안전보건관리책임자

② 대상 사업장은? : 용인지역 제조업 및 기타 **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** 사업장

③ 신규교육과 보수교육 대상의 차이는?

- 신규: 선임된 후 3개월 이내 교육 이수(1일/6시간)
 - 관리책임자 책임과 직무에 관한 사항
 - 산업안전보건법령에 관한 사항
- 보수: 신규교육 이수한 날로부터 2년 되는 날을 기준으로 전, 후 6개월 이내 교육 이수(1일/6시간)
 - 산업안전·보건정책에 관한 사항
 - 자율안전·보건관리에 관한 사항

④ 본 교육(법정의무교육) 미이행시 과태료는?

- 1차 위반 시 1명당 500만원
- 2차 위반 시 1명당 500만원
- 3차 이상 위반 시 1명당 500만원

⑤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교육 일정표 (09:00~16:00, 6H)

구분	과 목	세부내용	교육시간
1	○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책임	- 관리 책임자의 역할과 책임 - 산업안전보건법 및 정책 방향	3시간
2	○ 안전문화리더십	- 안전현황 - 안전리더십 - 안전문화체험	3시간

※ 접수는 직무교육센터(<https://www.dutycenter.net>)를 통해 진행